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방해 자동차 이동 등
조치 권한 부여 〉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15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2206015)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방해 자동차 이동 등 조치 권한 부여 (안 제19조의3 제2항, 제4항부처 6항까지 신설 등)	3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2206015)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8.

다. 회 부 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가나 아파트 등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 다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유지에 대한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등의 행정조치가 어려움.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사유지의 주차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경찰권 발동이나 행정적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사적자치 영역임에도 사유지의 관리자가 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민법」상 자력구제 규정에 근거해 주차장의 관리자가 강제 견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동 및 보관 조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음.

해외에서는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나라들이 있음. 독일의 경우 사유지 주차 공간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권한을 갖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민법」상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차량을 직접 견인 조치 할 수 있으며 견인비용은 불법주차자가 부담함.

미국의 경우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제거·견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 주의 법률 또는 행정규정이나 시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체로 무단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사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권리, 견인 가능성에 대한 경고 표시판 설치 의무 등에 대하여 각 주별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이나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동 과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토록 함(안 제19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방해 자동차 이동 등 조치 권한 부여
(안 제19조의3제2항, 제4항부터 6항까지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른 자동차의 진입 또는 진출을 막거나 주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동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직접 해당 자동차에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또한, 이와 같은 관리자의 이동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u><단서 신설></u>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킴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	③ (현행과 같음) ④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자는 다른 자동차의 진입 또는 진출을 막거나 주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다. ⑥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자동차 이동 조치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 ----- -----. 제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현행	개정안
료를 부과한다. <u><신설></u> 1. ~ 3. (생략) ④ (생략)	-----. 1.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u>자동차 이동 조치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u>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이동 조치 표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 이동 조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 이동 조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최근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하여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함으로써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 주정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하였

으며, 이러한 주차갈등이 폭력·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바 있음¹⁾.

그런데,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등 현행법의 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첫째, 「도로교통법」 제35조²⁾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3)의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차단기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공동주택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⁴⁾의 입장임⁵⁾.

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 2022.2.28. p.1.

2)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생략)

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4)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 3190 판결 등

5) 「교통안전법」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것을 “단지내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둘째,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⁶⁾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조치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셋째, 「형법」 제185조⁷⁾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나 같은 법 제314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6)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 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 「형법」

조8)에 따른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식의 경우,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질서 위반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단순 주차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형사처벌만으로 여러 사회적 갈등상황을 원만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 및 제19조의3)에서는 주차장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 자동차 이동 명령, 자동차 이동제한장치 설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참고1 참조),

그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주차질서 위반행위를 ①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②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 ③지정 주차구획 외에 주차, ④ 무료주차장 또는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일정기간 이상 고정적 주차(무단방치 등을 말함)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조치 대상이 되는 주차장⁹⁾도 ① 노상주차장(공영만 설치), ② 공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9)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영 노외주차장, ③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¹⁰⁾ 또는 ④ 공영 부설주차장(장기 무단방치의 경우만 해당)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거나 주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주차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개방주차장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행위 및 행정조치 >

구 분		근거규정	규정 내용
노상주차장 (공영만 설치)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8조의2 제1항	1. 화물주차구획에 주차 2.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3. 주차시간 제한, 전용주차구획 등 위반하여 주차 4. 지정주차구획 외 주차 5.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
	행정조치	제8조의2 제1항~제3항	1.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 명령 2. 자동차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주차방법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 3. 견인 및 보관 후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 후 매각, 폐차
노외주차장 (공영만 해당)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15조제2항	1.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2.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 3. 지정 주차구획 외에 주차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0)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 분		근거규정	규정 내용
			고정적으로 주차
	행정조치		1. 자동차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주차방법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 2. 견인 및 보관 후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 후 매각, 폐차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19조의3 제3항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
	행정조치		1. 자동차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주차방법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 2. 견인 및 보관 후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 후 매각, 폐차

자료 :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안 제19조의3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①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 제외)의 관리자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직접 주차방법의 변경,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안 제19조의3제6항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이러한 자동차 이동 조치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안 제19조의3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방해행위를 한 자동차를 이동시킴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려려는 취지로 이해됨¹¹⁾.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제2항¹²⁾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¹³⁾에 따라 관리인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공동주택의 주차 관리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고려할 때,

이처럼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외에는 면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주차방해행위에 따른 사회적

11) 유사한 입법례로 「민법」 제735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3 등이 있음.

「민법」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3(면책)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갈등 유발을 해소하는 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안 제19조의3제5항에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을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 제19조의3제7항에서 이처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서 준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조항의 경우 주체가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¹⁴⁾으로 행정청이 주체가 되며,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견인) ①차량의 보관, ② 신속한 통보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 ③차량 이동에 관한 공고, ④반환요구가 없을 시 차량 매각 또는 폐차, ⑤ 차량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을 시 비용 징수에 대한 「행정대집행법」 적용, ⑥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대행, ⑦대행업무자에 대한 필요 조치와 교육 명령 등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14)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 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그런데, 아파트 등 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신분은 민간인(私人)으로,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도로교통법」의 조항을 준용할 때 그 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¹⁵⁾, 공동주택 관리자가 견인된 차량을 별도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하거나, 운전자 등에게 견인 사실을 통보 또는 공고하거나, 사용자 부담 비용의 징수 등의 업무를 실제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15) 또한, 체계·자구 측면에서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우, 안 제19조의3제7항에서 제5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하면서 ‘이 경우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체계·자구 측면에서 안 제19조의3제5항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을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안 제19조의3제7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준용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개정안에서 준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제7항 및 제36조에서 차량 이동에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19조의3제5항과 같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차량 이동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내용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¹⁶⁾.

다. 국토교통부 의견

관리자에게 주차방법 직접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차량 파손, 운전자와 시비 등을 우려 실제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6) 현행 「주차장법」에서 유사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법 제8조의2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현행법을 상 주차장 질서위반 행위 및 제재 규정

주차장의 종류	설치자 및 법적근거	조치 근거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7조 <u>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u>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u>도로교통법</u>」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12조 <u>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u>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의 종류	설치자 및 법적근거	조치 근거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지정</u>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u>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u>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u> <u>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u> <u>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u>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에 대해 현행법은 “개방주차장”,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한하여 관리 조치 근거를 두고 있음.